

의안번호	2204012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 계 번호	24B389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9억 4,900만원, 2030년 102억 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97억 4,300만원(59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 국비: 향후 5년 동안 148억 7,200만원(연평균 29억 7,400만원)
- 지방비: 향후 5년 동안 148억 7,200만원(연평균 29억 7,4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및 운영 (안 제10조의5 신설)		1,949	3,811	5,813	7,963	10,207	29,743	5,949
	국비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2,974
	지방비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2,974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산한 소요비용으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이 추가되고,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필요인원 등이 조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5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의5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	• (추계)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유사사례(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법 제10조의3제1항¹⁾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²⁾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중 사회복지관을 두고 있는 단지는 총 159개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참고자료]에서 확인)
 -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2020년도부터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시작하였고³⁾, 2024년 6개 사회복지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음

1)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3) 서울시, 2023.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2023.2.1. p. 55

- 개정안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불확정적이지만, 서울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현재 확정된 바 없어 5:5로 가정함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⁴⁾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대상)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을 배치할 경우 소요비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향후 신규 설치계획을 알 수 없어, 추계기간 동안 159개 사회복지관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 균분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단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건비, 운영비, 기관부담금 및 자산취득비
-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소요비용은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함
 - 서울시 사회복지관 파견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는 1인당 4,132만원⁵⁾, 운영비는 인건비의 9.7%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10)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공공기관 기관부담요율	11.234	11.330	11.425	11.519	11.614	11.704
공공기관 자산취득비(천원)	6,888	7,033	7,188	7,339	7,493	7,650

5) 서울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 내 정신건강전담인력 인건비는 1인당 4,132만원, 운영비는 인건비 대비 9.7%

적용하며,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
 - 자산취득비는 고용 첫 해에만 발생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경우 소요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기관부담금 및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추계기간 균분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
 - 각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및 자사 취득비 전망치 적용

[표 2]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정신건강전문요원(신규, 명, a)		32	32	32	32	31	—
정신건강전문요원(누적, 명, b)		32	64	96	128	159	—
	인건비 단가(c)	44.5	46.2	47.9	49.7	51.6	—
	운영비 단가 (d=c×9.7%)	4.4	4.5	4.7	4.9	5.1	—
	기관부담금 (e=c×기관부담요율)	5.0	5.3	5.5	5.8	6.0	—
	자산취득비(f)	7.0	7.2	7.3	7.5	7.7	=
추가재정소요 {P=(b×(c+d+e))+(a×f)}		1,949	3,811	5,813	7,963	10,207	29,743
	국비(P×50%)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지방비(P×50%)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주. 기관부담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기관부담요율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9억 4,900만원, 2030년 102억 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97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및 운영 (안 제10조의5 신설)		1,949	3,811	5,813	7,963	10,207	29,743
	국비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지방비	974	1,905	2,906	3,982	5,104	14,872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산한 소요비용으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이 추가되고,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필요인원 등이 조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1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경우 추산한 소요비용으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이 추가되고,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필요인원 등이 조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

구분	운영현황(개소)
서울특별시	18
경기도	40
인천광역시	5
부산광역시	9
대구광역시	10
대전광역시	8
광주광역시	7
울산광역시	2
세종특별자치시	0
강원특별자치도	8
충청북도	6
충청남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전라남도	8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7
제주도	2
합계	159

주: LH는 사회복지관을 건설하고 무상임대 후 운영관련은 지자체에 위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